

1. 개정이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에 국제 무역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 및 기술안보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4명)을 증원하되, 무역투자실의 통상국내정책관 및 국내대책과를 2021년 11월 1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조정되는 정원 2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으로 충원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 및 무역투자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3. 00. 공포·시행)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무역투자실 통상국내정책관 내 활용촉진과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3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활용촉진팀으로 전환하고, 무역안보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정원(8급 2명, 9급 5명)의 직급을 조정(7급 7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4. 13. ~ 4.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22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통상국내정책관”을 각각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역정책과·무역진흥과·수출입과·무역안보과·투자정책과·투자유치과·해외투자과·총괄기획과·국내대책과 및 활용촉진과”를 “무역정책과·무역진흥과·수출입과·투자정책과·투자유치과·해외투자과·총괄기획과·활용촉진팀·무역안보정책과·무역안보심사과 및 기술안보과”로, “공업연구관”을 “공업연구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및 제11항을 삭제하고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무역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무역안보 관련 법령의 운용
3. 무역안보 관련 제도의 기획·총괄
4. 무역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

5. 무역안보 관련 국내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무역안보 관련 홍보 및 교육 관한 사항
7. 무역안보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8. 무역안보 관련 통계의 분석·관리 및 정보의 조사·연구
9.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 무역안보 관련 기관과의 협조·지원 및 조정
10.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11. 무역안보 관련 예산의 운용·조정
12.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통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3. 전략물자 등의 수출지역 및 우려거래자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4. 전략물자 등의 수출허가제도의 기획·운영
15. 전략물자 등의 판정제도의 기획·운영
16.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단속 및 처분
17.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위반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18. 전략물자 등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9.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0. 대외 무역안보 현안 대응 및 주요국 양자협력
21.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른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이행 업무
2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국제공조를 위한 무역제한 특별조치에 관한 업무

23. 전략물자관리원 업무의 지도 및 지원

24. 그 밖에 무역안보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⑮ 무역안보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 전략물자 판정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상황허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4. 전략물자 경유·환적 허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5. 전략물자 중개허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6.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7.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관련 지침의 운영 및 개선

8.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관련 최종용도, 최종사용자 조사 및 우려거래자 확인

9.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관련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10.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역량 향상에 관한 사항

11.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단속 지원

12.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13. 다이아몬드 원석 등 수출입 관리 관련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업무

14.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수출통제 관련 협약 등의 허가담당자 회의 대응

15. 전략물자 등의 수출 관련 우려거래자 관리

16. 그 밖에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에 필요한 사항

⑩ 기술안보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기술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기술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
3. 기술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해외 인수·합병 등에 관한 사항
4. 기술안보 관련 외국인 고용, 유학, 연구개발 등 관련 관계부처와 협조
5. 기술안보 관련 회의체의 운영
6. 기술안보에 관한 제도의 기획·운영
7. 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민감기술 등 관련 기술 기준의 마련
8. 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민감기술 등 관련 실태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분석·관리
9. 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민감기술 등 관련 주요국의 동향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10. 국가핵심기술보호등 기술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1.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의 제정 및 관리
13.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4.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15.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및 수출 승인

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운용
17. 기술안보를 위한 기반 조성
18.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9.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관련 유공자 포상제도 운영
20.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21. 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민감기술 등 기술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단속 지원
22. 전략물자등 수출입 통제대상 품목 결정에 관한 사항
23.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수출통제 관련 협약, 그 밖의 무역안보 관련
신규 체제 대응 및 협력
24. 무역안보 관련 양자·다자 협의체 대응 및 국가간 협력
25. UN 제재 및 주요국 독자제재 등 무역안보 관련 국제제재의 대응
및 국가간 협력
26. 무역안보 관련 국제체제, 협약, 규범 등 이행 및 준수 등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활용촉진과장”을 “활용촉진팀장”으로
한다

제35조제4항 전단 중 “통상국내정책관”을 “무역투자실”로 한다.

제41조의4 및 제4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4(통상국내정책관) ① 통상국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상국내정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제41조의5(국내대책과) ① 국내대책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내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협정 협상 동향의 파악 및 분석
2. 통상협정 협상 동향에 관한 관계 부처 의견 수렴
3. 통상협정에 관한 협상 동향 자료집 발간
4. 국내외 통상협정 사례에 대한 연구 및 분석
5. 다른 국가의 통상협정 추진 동향 점검 및 분석
6. 통상협정 체결 상대국의 국회 비준동의 처리 동향 연구
7. 통상협정과 관련된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의견수렴, 기획 및 종합
8. 통상협정과 관련된 국내 보완대책의 협의 및 조정
9. 통상협정 관련 국내보완대책 사후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
10. 통상협정과 관련된 다른 국가의 국내보완대책 사례 연구 및 분석
11. 통상협정 체결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총괄
12. 통상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의 효과분석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및 조정
13. 통상협정의 이행 관련 제도의 선진화 전략 연구
14. 통상협정의 이행을 위한 법령 제·개정 및 다른 국가의 제도개선 사례 수집 및 분석
15. 통상협정 발효에 따른 경제적 영향의 사후 점검

16. 통상협정 관련 사후적 영향 평가보고서 작성

③ 국내대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3 중 총계 “891”을 “898”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884”를 “891”로 하며, 일반직 계 “872”를 “879”로 하고,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50”을 “253”으로 하며,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사회복지주사 · 감사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생주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항공주사 · 방재안전주사 · 공업연구사 · 학예연구사 · 편사연구사 · 농업연구사 · 임업연구사 · 해양수산연구사 · 기상연구사 · 보건연구사 · 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79”를 “18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53”을 “60”으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26”을 “24”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6”을 “4”로 하며,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통계서기

보·환경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사서서기보·보건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7”을 “4”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891”을 “898”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885”를 “892”로 하며, 일반직 계 “873”을 “880”으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부감사관·공업연구관·학예연구관·편사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76”을 “279”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사회복지주사·감사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항공주사·방재안전주사·공업연구사·학예연구사·편사연구사·농업연구사·임업연구사·해양수산연구사·기상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69”를 “17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통계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39”를 “46”으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26”을 “24”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6”을 “4”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통계서기

보·환경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사서서기보·보건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7”을 “4”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39조제4항, 제40조제7항, 제41조제9항, 제41조의2제2항 및 제41조의3제2항 관련)”을 “(제39조제4항, 제40조제7항, 제41조제9항, 제41조의2제2항, 제41조의3제2항, 제41조의4 및 제41조의5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통상국내정책관(존속기한: 2021년 11월 19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7. 국내대책과(존속기한: 2021년 11월 19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한 활용

촉진팀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활용촉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활용촉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총괄기획과장이 분장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2020. 2. 25.>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8조의4제1항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무역안보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무역안보정책과	5명 (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술안보과	2명 (4급 1명, 5급 1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산업혁신성장실) ① ~ ④ (생 략)	제9조(산업혁신성장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산업기술시장혁신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u>22.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기 술보호정책의 수립·시행</u>	<u><삭 제></u>
<u>23.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u>	<u><삭 제></u>
<u>24.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해제 및 수출 승인</u>	<u><삭 제></u>
<u>2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의 제정 및 관 리</u>	<u><삭 제></u>
<u>26.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및 전 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u>	<u><삭 제></u>
<u>27.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 호 관련 유공자 포상제도 운 영</u>	<u><삭 제></u>
<u>28.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 제협력사업의 추진</u>	<u><삭 제></u>
<u>29.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u>	<u><삭 제></u>

운영

30.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31. ~ 40. (생략)

⑥ ~ ⑬ (생략)

제14조(무역투자실) ① 무역투자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무역정책관·투자정책관 및 통상국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무역정책관·투자정책관 및 통상국내정책관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무역투자실에 무역정책과·무역진흥과·수출입과·무역안보과·투자정책과·투자유치과·해외투자과·총괄기획과·국내대책과 및 활용촉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략)

<삭 제>

31. ~ 40. (현행과 같음)

⑥ ~ ⑬ (현행과 같음)

제14조(무역투자실) ① -----

-- 무역안보정책관-----

----- 무역안보정책관 -----
-----.

② ----- 무역정책과·무역진흥과·수출입과·투자정책과·투자유치과·해외투자과·총괄기획과·활용촉진팀·무역안보정책과·무역안보심사과 및 기술안보과-----
----- 공업연구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무역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제 등 무역안보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제 관련 법령 및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의 운용
3.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제도 및 사전판정제도의 운용
4.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제 위반기업 처분 및 관리
5. 전략기술의 무형이전 통제 관련 시책의 수립·추진
6.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제 현황 조사·분석
7.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제 대상 품목 결정에 관한 사항
8.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제 제도 홍보 및 교육
9.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제 관련 기관과의 협의·조정
10.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관련 기업 등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의 운용
11. 전략물자·기술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삭 제>

12.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정보
시스템의 운용

13. 전략물자·기술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14.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전략
물자·기술 관련 국제협력

15.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른 무
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이
행 업무

16. 다이아몬드 원석 등 수출입
관리 관련 국제협약 이행에 관
한 업무

17.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국제공조를 위한 무역제한 특별
조치에 관한 업무

18. 전략물자관리원 업무의 지
도 및 지원

⑦ ~ ⑩ (생략)

⑪ 국내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협정 협상 동향의 파악
및 분석

2. 통상협정 협상 동향에 관한
관계 부처 의견 수렴

3. 통상협정에 관한 협상 동향
자료집 발간

⑦ ~ ⑩ (현행과 같음)

<삭제>

4. 국내외 통상협정 사례에 대한 연구 및 분석
5. 다른 국가의 통상협정 추진 동향 점검 및 분석
6. 통상협정 체결 상대국의 국회 비준동의 처리 동향 연구
7. 통상협정과 관련된 국내보완 대책에 대한 의견수렴, 기획 및 종합
8. 통상협정과 관련된 국내 보완대책의 협의 및 조정
9. 통상협정 관련 국내보완대책 사후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
10. 통상협정과 관련된 다른 국가의 국내보완대책 사례 연구 및 분석
11. 통상협정 체결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총괄
12. 통상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의 효과분석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및 조정
13. 통상협정의 이행 관련 제도의 선진화 전략 연구
14. 통상협정의 이행을 위한 법령 제·개정 및 다른 국가의 제도개선 사례 수집 및 분석

15. 통상협정 발효에 따른 경제적 영향의 사후 점검

16. 통상협정 관련 사후적 영향 평가보고서 작성

⑫ (생략)

⑬ 활용촉진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신설>

⑫ (현행과 같음)

⑬ 활용촉진팀장은-----
-----.

1. ~ 11. (현행과 같음)

⑭ 무역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무역안보 관련 법령의 운용

3. 무역안보 관련 제도의 기획
· 총괄

4. 무역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

5. 무역안보 관련 국내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무역안보 관련 홍보 및 교육
관한 사항

7. 무역안보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8. 무역안보 관련 통계의 분석
· 관리 및 정보의 조사·연구

9.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

른 전략물자관리원 등 무역안
보 관련 기관과의 협조·지원
및 조정

10.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
회의 및 실무협의회 운영

11. 무역안보 관련 예산의 운용
· 조정

12.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통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
진

13. 전략물자 등의 수출지역 및
우려거래자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4. 전략물자 등의 수출허가제
도의 기획·운영

15. 전략물자 등의 관정제도의
기획·운영

16.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단속 및 처분

17.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위반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18. 전략물자 등 수출입관리정
보시스템 구축·운영

19.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
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20. 대외 무역안보 현안 대응 및
주요국 양자협력

21.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른 무
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이행 업무

2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국제공조를 위한 무역제한 특
별조치에 관한 업무

23. 전략물자관리원 업무의 지
도 및 지원

24. 그 밖에 무역안보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
는 사항

⑮ 무역안보심사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 전략물자 판정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상황허가 제도의 운영 및 개
선

4. 전략물자 경유·환적 허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5. 전략물자 중개허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6.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신 설>

7.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관련 지침의 운영 및 개선
 8.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관련 최종용도, 최종사용자 조사 및 우려거래자 확인
 9.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관련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10.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역량 향상에 관한 사항
 11.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단속 지원
 12.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13. 다이아몬드 원석 등 수출입 관리 관련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업무
 14.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수출 통제 관련 협약 등의 허가담당자 회의 대응
 15. 전략물자 등의 수출 관련 우려거래자 관리
 16. 그 밖에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에 필요한 사항
- ⑩ 기술안보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민

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
보(기술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기술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
에 관한 사항

3. 기술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해외 인수·합병 등에 관한
사항

4. 기술안보 관련 외국인 고용,
유학, 연구개발 등 관련 관계
부처와 협조

5. 기술안보 관련 회의체의 운
영

6. 기술안보에 관한 제도의 기
획·운영

7. 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민
감기술 등 관련 기술 기준의
마련

8. 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민
감기술 등 관련 실태의 조사
· 분석 및 통계의 분석·관리

9. 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민
감기술 등 관련 주요국의 동
향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10. 국가핵심기술보호등 기술보
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1.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의 제정 및 관
리
13.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산
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4.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15.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해제 및 수출 승인
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운용
17. 기술안보를 위한 기반 조성
18.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및 전
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9.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
호 관련 유공자 포상제도 운
영
20.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
제협력사업의 추진
21. 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
민감기술 등 기술의 수출입

	<u>통제 관련 현황 조사, 단속 지원</u> <u>22. 전략물자등 수출입 통제대상 품목 결정에 관한 사항</u> <u>23.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수출통제 관련 협약, 그 밖의 무역안보 관련 신규 체제 대응 및 협력</u> <u>24. 무역안보 관련 양자·다자 협의체 대응 및 국가간 협력</u> <u>25. UN 제재 및 주요국 독자제재 등 무역안보 관련 국제제재의 대응 및 국가간 협력</u> <u>26. 무역안보 관련 국제체제, 협약, 규범 등 이행 및 준수 등에 필요한 사항</u>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생략)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별표 3의2의 정원 중 <u>통상국내정책관</u> 에 두는 정원 중 2명(4급 1명,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1명(5급 1명)은 관세청 소속	④ ----- <u>무역투자실</u> ----- ----- ----- ----- ----- -----

공무원으로, 통상정책국에 두는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

-----.

제41조의4(통상국내정책관) ① 통상국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상국내정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제41조의5(국내대책과) ① 국내대책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내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협정 협상 동향의 파악 및 분석
2. 통상협정 협상 동향에 관한

관계 부처 의견 수렴

3. 통상협정에 관한 협상 동향
자료집 발간

4. 국내외 통상협정 사례에 대
한 연구 및 분석

5. 다른 국가의 통상협정 추진
동향 점검 및 분석

6. 통상협정 체결 상대국의 국
회 비준동의 처리 동향 연구

7. 통상협정과 관련된 국내보완
대책에 대한 의견수렴, 기획
및 종합

8. 통상협정과 관련된 국내 보
완대책의 협의 및 조정

9. 통상협정 관련 국내보완대책
사후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

10. 통상협정과 관련된 다른 국
가의 국내보완대책 사례 연구
및 분석

11. 통상협정 체결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총괄

12. 통상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
도개선의 효과분석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및 조정

13. 통상협정의 이행 관련 제도
의 선진화 전략 연구

	<u>14. 통상협정의 이행을 위한 법령 제·개정 및 다른 국가의 제도개선 사례 수집 및 분석</u> <u>15. 통상협정 발효에 따른 경제적 영향의 사후 점검</u> <u>16. 통상협정 관련 사후적 영향 평가보고서 작성</u> <u>③ 국내대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u>
--	--